

화성 반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계획 및 열람공고

우리 조합에서 시행하는 ‘화성반월지구 도시개발사업’의 「도시개발법」 제3조 및 제4조, 제9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(변경) 및 개발계획이 수립 고시[화성시 고시 제2018-447호(2018.09.19.)], 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실시계획 인가[화성시 고시 제2019-415호(2019.08.20.)]된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(영업권포함) 등에 대하여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(보상계획의 열람 등)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 하오니, 물건 등의 보상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. 8. 4.

반월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장



1. 사업의 개요

- 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23번지 일원
- 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종 류 :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환지방식
 - 명 칭 : 화성 반월지구 도시개발사업
- 다. 사업시행자 : 반월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
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28-1(2층)
Tel.031-202-3337 FAX.031-202-3353

2.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

- 가. 토지 : 환지방식으로 해당 없음
- 나. 물건 : 붙임 1 참조

3. 보상 시기·방법 및 절차

- 가. 보상시기 : 열람기간이 지난 후 보상대상자에게 보상액을 산정하여 별도 통지
- 나. 보상방법 : 현금보상(계좌이체)
- 다. 보상절차 : 보상계획공고(열람 및 이의신청) → 감정평가 → 보상금 산정
→ 보상협의요청 → 협의(계약) →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
※ 협의 불성립의 경우 : 수용재결 → 공탁 → 소유권이전

라. 감정평가업자 추천

- 1)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(보상액의 산정)에 따라 시·도지사와 보상대상자는 감정평가법인 등을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음
 - 사업시행자(1개 감정평가업자 추천), 시·도지사(1개 감정평가업자 추천), 보상대상자(1개 감정평가업자 추천) (붙임 2 : 감정평가업자 추천서)
 - 시·도지사 및 보상대상자 미추천시 사업시행자가 2개 감정평가업자 선정하여 평가함
- 2) 제출기한 : 보상계획공고 완료 후 30일 이내
- 3) 보상금 산정방법 : 각 감정평가업자(2~3인)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 적용

4. 열람 및 이의신청

가. 열람기간 : 2020년 8월 4일 ~ 8월 19일(15일, 초산일 불산입)

나. 공고방법 : 개별통지, 화성시청 홈페이지 및 조합 홈페이지 게시판 열람공고

다. 열람장소 :

- 반월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 및 홈페이지

[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28-1(2층) ☎ 031-202-3337, <https://banwol.creatorlink.net>]

- 보상업무대행사 (주)대한건설디앤씨

[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300(창곡동509) 위례중앙타워 311호 ☎ 070-4192-6870]

라. 이의신청방법 :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 15조(보상계획의 열람 등) 제3항에 따라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(붙임3 : 이의신청서)

※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조(대리인)에 따라 당 사업의 보상업무 대행사인 (주)대한건설디앤씨에도 서면으로 제출 가능

마. 기타 : 열람 시 신분증 지참(대리인 열람 시 위임장, 인감증명서 지참)

5. 기타사항

가. 개인별 보상대상 물건 등 보상금액, 절차,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따라 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개인별로 통지함.

나. 보상대상자(물건 소유자), 이해관계인에 대한 개별통지는 현재 확인된 주소로 통지하며 주소 및 거소 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.

다. 기타 문의 : 보상업무대행사 - (주)대한건설디앤씨(070-4192-6870)

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

연번	소재지	지 번 (원래지번)	물건의 종류	구조 및 규격	수량		보상 대상자(소유자)		소유권 이외권리	비고
							성 명	주 소		
1	반월동	33	공장	철골조	1,847.42㎡	553㎡	임*석	경기도 화성시 영*로*5번길 ***(반월동)		
						900㎡				
						394.42㎡				
				샌드위치판넬		18㎡				
			옹벽	대략 2m, 두께 200정도						
			바닥콘크리트	20t / 1,328㎡						
			물관정	2개		2식				
			전기전력	250 kw						
			영업권			1식				
계		1필지					1명			

※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보상대상자 등의 성명 등은 일부 표기함(우편 별도 통보)

[붙임2]

보상대상자 감정평가업자 추천서

추천 감정평가업자	법인(지사)명	평가업자 성명	연락처

추천사유	
------	--

토지 소재지	편입지번 (원래지번)	편입 면적 (㎡)	보상대상자(소유자)		보상대상자 (소유자) 확 인	연락처	비 고
			성 명	주 소			

※ 보상대상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.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
귀 조합에서 시행하는 ‘화성 반월지구 도시개발사업(환지방식)’에 대한 보상계획을 열람하고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액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.

2020 년 월 일

추천인 :

(인)

반월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귀하

이 의 신 청 서

신 청 인	성명 또는 명칭	(인)	접수방법 : 유선, 방문
	주 소		접 수 자 : (인)
	연 락 처		
사업명칭	• 화성 반월지구 도시개발사업(환지방식)		
이의신청대상 소재지 및 종류			
이의신청 사유 및 내용			

※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‘화성 반월지구 도시개발사업(환지방식)’에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 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.

2020 년 월 일

반월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귀하